

November 24,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61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0. 11. 13. ~ 11. 20.)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지난 11월 19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83건의 안건 요지 등을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1]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논의·확정

2020. 11. 1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 고려하여 20%로 인하, ② 향후 시장여건 급변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 ③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21년 하반기부터 시행 등이 있음

[참고자료]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융위2]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 마련

2020. 11. 18. 금융위원회는 국제적인 제도개혁 동참 및 EU 승인 확보 등을 위해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 (사용규모, 대체가능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②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기관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 ③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의무로 ‘산출업무규정 마련, 주기적 점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설치’ 부과 등이 있음

[참고자료] 금융거래지표법 및 하위규정 시행



[금융위3]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2020. 11. 18. 금융위원회는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연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여 은행, 보험, 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할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신한은행), ② T-map과 D-Tag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캐롯손보-SK 텔레콤), ③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한화생명), ④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페이히어), ⑤ 결제용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국내·외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에이엔비코리아) 등이 있음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금융위4] 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2020. 11. 19. 금융위원회는 일반청약자가 기업공개 과정에서 공모주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일반청약자 배정방식 변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 ② (일반청약자 물량확대) 일반청약자에 대해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중 최대 5%를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도 추가로 배정, ③ (일반청약자 청약·배정절차 개선) 복수 주관사(인수기관)를 통한 중복 청약을 제한하고 청약광고시 투자위험을 고지하도록 절차 개선 등이 있음

[\[참고자료\]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 보도자료](#)



[\[참고자료\]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



[개보위]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와 출범 후 첫 업무협약 체결

2020. 11.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을 통한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②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 ③ ‘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④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지원, 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7개 과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함

[\[참고자료\] 개보위-과기부,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해 협력](#)



[국토부]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으로 국가대표 드론기업 육성

2020. 11. 13. 국토교통부는 제1회 드론산업협의체를 개최하고,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할 K-드론 브랜드 기업 육성과 국내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심의·의결함.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기업 집중 지원을 통한 핵심기업 육성을 위해 ① 공공조달 개선, ② 투자·지원 확대, ③ 실증기반 강화, ④ 성공모델 발굴 및 조기상용화를 추진하고, 드론 활용산업 육성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① 드론 구매·교육 확대, ②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강화, ③ 규제·제도 개선, ④ 드론활용 내실화·다양화 추진 등이 있음

[\[참고자료\] 드론산업 육성정책 2.0 으로 국가대표 드론기업 육성](#)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제61차 위원회 회의

2020. 11. 16.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① 라디오방송국(FM) 변경허가에 관한 건, ② 「방송광고 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상 소유제한 위반 사업자 시정명령에 관한 건, ③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등이 의결 되었으며, 보고 안건으로는 ①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관한 사항,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6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과 제도 발전방안 논의

2020. 11. 19.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관리를 강화하고 특례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법령개정 추진을 적극 지원, ②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특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 ③ 증가하는 과제 수요와 후속 법령 개정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담 조직 강화, ④ 보다 많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처의 특례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개최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포 법안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020. 11. 17. 금융회사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적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이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신분증 확인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등이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금융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0. 11. 17.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기준을 1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조치 및 그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조치를 종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 법안

[법무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법무부는 2020. 11. 16. 부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긴급통신 제한조치 집행 시 사후 허가청구 필수화, ②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취득자료 폐기 등이 있음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방부는 2020. 11. 17. 부터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이는 무기체계 전장영역이 사이버 및 우주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무기체계 분류 추가, 국산화부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군용총포등 허가 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무기체계의 분류기준 추가(안 제2조), ② 국산화부품 방산물자

지정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40조), ③ 원자재 규격의 확인 및 품질검사에 대한 기품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71조) 등이 있음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부는 2020. 11. 20. 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이는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임

> 법률 발의안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에 대한 거래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같은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여 주주총회가 효과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인 회사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하여 원활한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21 및 제315조제3항)

[정무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등11인)」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2배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분할·합병 또는 신회사 설립 시 관련 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 과징금 결손처분, 자료열람요구권, 문서의 송달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제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6조)

[정무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인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에 관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겸영·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보험회사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공제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와의 공동검사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 2,07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성임원의 수는 총 1,199명으로 전체 임원의 4.0%에 불과하며,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67.9%로 나타남. 남녀 이사의 비율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없어 법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바, 이에 기업 내 여성 이사가 일정 비율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20)

[환노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도록 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간의 불합치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 갈등을 예방하고, 또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과방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9인)」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민주주의 여론형성기능을 왜곡·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치중립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데 이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어뷰징(Abusing)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하는 어뷰징(Abusing)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8조제4항, 제73조제5호의2 신설 등)

[행안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서 수도권 밖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특정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신설)

[국토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 또는 인증된 전동킥보드 등을 새로운 교통수단의 하나로 그 지위를 확립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보건위]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2인)」

4차 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의료기술과 헬스케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융복합헬스케어 기기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자위]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2인)」

제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시대 대응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제도를 재정비하여 산업발전의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산자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직접융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재정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재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2020. 11. 19.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는 총 83개 안건(법률안 80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된 안건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제382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서예지

소속변호사

T. +84-24-3245-4043

E. yjiseo@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